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자정보산업과 조영신 과장(2110-5671), 문준선 사무관(2110-5672)

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추진

- 보안관제 시장진입 문턱은 낮추고 사후관리 강화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12.17일, **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확정하였다고 밝힘**

* 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등에관한공고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-478호, 12.21일 관보게재 예정)

□ 정부는 DDos 등 신·변종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**공공기관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구축 의무화를 골자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**(대통령 훈령)**을 개정**하였음('10.4월)

* 28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시·도에 보안관제 센터설치 계획('11년. 상반기)

□ 그 후속조치로 지경부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**관제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하여(간담회 4회 개최) 마련하였음

□ 금번 공고안에서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시장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**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**하였음

○ **보안관제 전문인력 15명 이상, 자기 자본금 20억원 이상, 3년간 30억원 이상 보안관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갖춘 기업**의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,

○ 수행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보안관제 능력평가 통과시(100점 만점에 70점 이상) 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전문업체간 경쟁을 촉진**할 계획임

□ 다만,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**보안관제 전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**하기로 하였음

○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매년 1회 보안관제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, 평가결과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◁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기준 ▷

□ 전문업체가 갖춰야할 기술인력 수와 재정수준, 수행경험·능력

○ 인력 : 기술인력 15명 이상 (고급 3명 이상, 중급 6명 이상)

○ 재정 : 자기 자본금 20억원 이상

○ 경험 :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 관제 프로젝트 수행 또는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 통과 (100점만점 중 70점 이상)

<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 >

경 험(45점)	○ 최근 1년간 프로젝트 실적(자사인력 비중 높고, 파견관제시 우대)
전문성(40점)	○ 고급 기술인력의 수, 자체 보안관제센터 보유여부 등
신뢰도(15점)	○ 기업신용평가등급, 정보보호인증기업 여부 등
기 타(가감)	○ 벤처기업 우대, 공공기관 입찰 참여제한 경력 등 감점

□ 지식경제부는 **6개월간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두고, 내년 7.1일부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신청을 접수**할 계획이며,

○ 그동안 업계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관련 **설명회를 개최**하여 관제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
□ 지식경제부는 "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의무화, 전문업체 지정으로 **'14년까지 약 2,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 1,2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**된다"고 밝힘